

의안번호	제788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병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8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 임병운,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 1. 제안이유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지원 등 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 체계를 폭 넓게 규정하여 충북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포함 사항 추가 규정 (안 제5조)
-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사항 추가 규정 (안 제7조)
- 디지털 전환 위원회 수당 및 비밀보호 의무 규정 (안 제12조, 제13조)
- 디지털 전환 위원회 관계 기관 협조 근거 규정 (안 제14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발굴 및 지원 (안 제15조)
- 중소기업 및 창업자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 (안 제16조)
- 디지털 기술 경진대회 및 후속 지원 근거 규정(안 제18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조례안예고 : 2024. 11.
- 협의 :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
-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말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말한다.
4.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가공·처리·저장·구현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설계, 제작·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정하는 기술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기술 공유와 확산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 전환 촉진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및 교육·훈련 지원
2.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촉진 기반 유통체계 구축사업
5. 스마트 도시·제조·농업·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디지털 전환사업
6.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관련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전환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나. 디지털 전환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12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당 등  
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  
에 디지털 전환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문조사·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디지털 전환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교육 및 상담
2.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디지털 전환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협업 활동의 수행
6. 그 밖에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디지털 기술 경진대회) ① 도지사는 디지털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과 기술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학,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외국인, 대학, 기업 등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진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에게 후속

연구개발비 및 판로개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법인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업데이터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2. 선도사업 내용
3. 산업 디지털 전환 기대효과
4.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혁신·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비용 발생 요인

-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 조례안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 조례안 제16조(디지털 전환 및 기술지원 등의 활성화)
- 조례안 제17조(관계기관 지정·운영)
- 조례안 제18조(디지털 기술 경진대회)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1,942억원

- 디지털 전환 지원 11개 사업 : 1,942억원  
(국 971, 도 273, 시군 146, 기타 552)

다.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 기타(자부담)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장 유 희 남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47,077,430	50,138,430	36,078,430	30,458,430	30,458,430	194,211,150
의 존 재 원	DX협업지원센터 구축	845,000	845,000	845,000			2,535,000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10,060,000	11,060,000				21,120,000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사업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27,137,430	27,137,430	27,137,430	27,137,430	27,137,430	135,687,150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1,269,000	1,269,000	1,269,000	1,269,000	1,269,000	6,345,000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3,000,000	3,000,000				6,000,000
	메타버리지원센터 운영	1,112,000	1,112,000	1,112,000	1,112,000	1,112,000	5,560,000
	충북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AI 자율제조 지역확산 사업	1,300,000	2,525,000	2,525,000			6,350,000
	거점기관 개방혁신 사업	1,414,000	2,250,000	2,250,000			5,914,000
재원 조달		47,077,430	50,138,430	36,078,430	30,458,430	30,458,430	194,211,150
의 존 재 원	소 계	25,110,000	27,231,000	17,131,000	13,806,000	13,806,000	97,084,000
	보조금	25,110,000	27,231,000	17,131,000	13,806,000	13,806,000	97,084,000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6,612,030	7,394,530	5,694,530	3,827,030	3,827,030	27,355,150
	지방세	6,612,030	7,394,530	5,694,530	3,827,030	3,827,030	27,355,150
	세외수입						
시군비		3,958,400	4,115,900	2,415,900	2,048,400	2,048,400	14,587,000
기타(자부담)		11,397,000	11,397,000	10,837,000	10,777,000	10,777,000	55,185,000